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단3317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A

변론 종결2024. 11. 21.

판결 선고2024. 12. 5.

주 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에 관하여 2020. 7.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에 관하여 2020. 7.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 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피고가 B과 사이에 2020. 7. 29.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3. 4. 10. 제3자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매도하고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회원권의 원물반환은 이행불능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의 가액 및 자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회원권의 가액이 2023. 4. 10. 3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원금만

201,123,31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회원권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30,000,000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의 한도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송호섭

별지